

광주광역시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이하 “통합조례”)가 2003. 12. 31 폐지됨에 따라 당초 통합조례의 취지를 살려 창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보다 발전적인 창안제도 운영을 위해 창안제출 자격 및 시상등급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창안서의 제출 : “구민이면 누구나”를 “구민을 포함하여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로 함(안 제4조 제1항)
- 위원회 명칭 변경 : “서구구민창안심사위원회”를 “서구창안심사위원회”로 함(안 제7조)
- 위원회 구성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안 제8조제3항)
 - 위촉 위원의 해지 규정 신설(안 제8조제4항)
- 회의소집일 통보 : 각 위원에게 5일전까지 서면 통지(안 제11조제2항)
- 회의록 작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제3항)
- 회의 및 회의록 공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제4항)
- 시상등급 및 부상
 - 시상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에서 “장려상”을 삭제함(안 제16조제1항)
 - 금상 “50만원”을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은상 “30만원”을 “1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으로 하고 동상 “20만원”을 “10만원 이상 15만원 미만”으로 하며, 장려상의 등급·훈격·부상은 삭제함(안 제18조제1항 표)

3. 검토의견

이번 개정안은 폐지된 통합조례의 당초 취지를 살려 창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보다 발전적인 창안제도 운영을 위해 창안제출 자격 및 시상등급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제1항 및 안 제7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개정안 제4조제1항에서는 창안서의 제출권자를 “구민이면 누구나”를 “구민을 포함하여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구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창안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안이라 생각하며, 창안서 자체가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민주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구태여 제출권자를 서구민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안 제7조는 창안서 제출권자의 확대에 따른 안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제출권자를 개정안과 같이 확대할 경우 구민 관련 제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구체적으로 구민 관련 규정이 “구민에 의한”의 의미인지, “구민을 위한”의 의미인지)가 있어야 한다고 보며, 조례 제1조 중 “구민들의”와 “구민참여의”라는 자구를 삭제하고, 조례 제5조 중 “구민에게”라는 자구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의견대비표

현행조례	수정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전반에 관한 <u>구민들의</u>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u>구민 참여의</u> 민주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구민창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삭제</u>) ----- (<u>삭 제</u>) ----- ----- -----.
제5조(창안 홍보 및 지원) 각 실·담당관·과·소·동장은 구정발전에 관한 창안을 제출토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창안에 따른 각종 통계자료 등 <u>구민</u> <u>에게</u>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창안 홍보 및 지원) ----- ----- ----- (<u>삭 제</u>) ----- -----.

안 제8조제3항과 제4항 및 안 제11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위원의 연임과 위촉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8조제3항과 제4항 그리고 위원장의 회의소집권과 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회의소집통지에 관한 사항,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11조는 폐지된 통합조례의 취지를 반영한 안이라 생각합니다.

안 제16조제1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조례 제16조제1항에서는 창안에 대한 등급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장려상을 삭제하였습니다. 주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상등급을 현행대로 다양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의견대비표

개 정 안	수정의견
제16조(등급결정) ①창안에 대한 등급은 <u>금상, 은상, 동상, 노력상</u> 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등급별 인원수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16조(등급결정) ① ----- <u>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u> ----- -----.

안 제18조제1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동조 제1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하자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내”와 “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내”라 하는 것은 “기간 내에서”처럼 시간의 표시를 의미하는 용어이고, “안”이라 하는 것은 “범위 안에서”처럼 면적의 표시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자치입법편람은 물론 일반적인 입법례에서도 “내”와 “안”을 모두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있으며, 개정안도 이를 반영하자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상금액의 기준은 본 항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규정과 관련하여 살펴본다면 시상등급에 따라 일정금액이하로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주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금액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의견대비표

개 정 안	수정의견																																				
제18조(시상등급 및 부상) ①채택된 창안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기준에 준하여 시상한다.	제18조(시상등급 및 부상) ①(개정안과 같음)																																				
<table><tr><th>등 급</th><th>훈 격</th><th>부 상</th></tr><tr><td>금 상</td><td>구청장</td><td><u>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u></td></tr><tr><td>은 상</td><td>“</td><td><u>1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u></td></tr><tr><td>동 상</td><td>“</td><td><u>10만원 이상 15만원 미만</u></td></tr><tr><td>(삭 제)</td><td>(삭 제)</td><td>(삭 제)</td></tr><tr><td>노력상</td><td>“</td><td>5만원 이하 상당의 기념품</td></tr></table>	등 급	훈 격	부 상	금 상	구청장	<u>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u>	은 상	“	<u>1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u>	동 상	“	<u>10만원 이상 15만원 미만</u>	(삭 제)	(삭 제)	(삭 제)	노력상	“	5만원 이하 상당의 기념품	<table><tr><th>등 급</th><th>훈 격</th><th>부 상</th></tr><tr><td>금 상</td><td>구청장</td><td><u>50만원 이하</u></td></tr><tr><td>은 상</td><td>“</td><td><u>30만원 이하</u></td></tr><tr><td>동 상</td><td>“</td><td><u>20만원 이하</u></td></tr><tr><td>장려상</td><td>“</td><td><u>10만원 이하</u></td></tr><tr><td>노력상</td><td>“</td><td>5만원 이하 상당의 기념품</td></tr></table>	등 급	훈 격	부 상	금 상	구청장	<u>50만원 이하</u>	은 상	“	<u>30만원 이하</u>	동 상	“	<u>20만원 이하</u>	장려상	“	<u>10만원 이하</u>	노력상	“	5만원 이하 상당의 기념품
등 급	훈 격	부 상																																			
금 상	구청장	<u>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u>																																			
은 상	“	<u>1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u>																																			
동 상	“	<u>10만원 이상 15만원 미만</u>																																			
(삭 제)	(삭 제)	(삭 제)																																			
노력상	“	5만원 이하 상당의 기념품																																			
등 급	훈 격	부 상																																			
금 상	구청장	<u>50만원 이하</u>																																			
은 상	“	<u>30만원 이하</u>																																			
동 상	“	<u>20만원 이하</u>																																			
장려상	“	<u>10만원 이하</u>																																			
노력상	“	5만원 이하 상당의 기념품																																			